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2 -1251 호

건설기계조종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

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9조 위반자에 대하여 건설기계조종사 행정처분(면허효력정지)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2년 9월 27일

서 대 문 구 청 장

1. 공고명 : 건설기계조종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대상 : 조*학(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2*길 3*-3, *01호)
3. 공고기간 : 2022. 9. 27. ~ 10. 11. (14일간)
4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
5. 공고내용

가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: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8조 위반

나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: 면허효력정지 5일

다. 법적근거 :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9조

라. 청문개요

1) 청문일시 : 2022. 10. 25.(화) 10:00

2) 청문장소 : 서대문구청 1층 민원여권과

3) 의견제출 :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36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 의거 행정처분 전 의견청취를 위해 청문을 실시하오니, 의견 및 소명자료가 있을 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. 미참석시 2022. 10. 24.(월)까지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4) 기타사항 : 청문 미참석 또는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 제4항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.

마. 의견제출처 : 서대문구청 1층 민원여권과(서대문구 연희로 248)

☎)02-330-1148 FAX)02-330-1684,

e-mail)mijeong521@sdm.go.kr

붙임 : 의견제출서 1부. 끝.